



제304회 임시회
2011. 10. 24.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○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정책복지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1년 10월 10일
- 회부일자 : 2011년 10월 13일

3. 제안이유

-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제고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관리범위 확대 및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정책연구용역 심의·관리 적용범위 확대 (안 제3조)
 - 건당 5천만원이상 → 금액불문 모든 정책연구용역으로 확대
- 위원회 운영 중 회의소집 통지 기간 단축 (안 제7조)
 - 회의소집 통지일 15일전 → 7일전으로 단축
- 용역실명제 명문화 (안 제9조)
 - 용역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용역실명제 운영
-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(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)
 - 용역담당관 → 용역 실명 대상공무원으로 개정

5. 검토의견

가. 조례 개정의 동기 및 필요성

- 동 조례안은 정책연구용역 심의 및 관리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용역의 전 과정에 대해 관계공무원에게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내실 있는 연구용역 수행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

나. 세부 내용별 검토 의견

- 심의·관리대상 용역이 금액에 관계 없이 모든 정책연구용역으로 확대되어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반해, 전액 국비 또는 국가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심의·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바,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지 검토가 필요함 (안 제3조)
- 용역 실명 대상공무원을 용역관련 실·국장, 과장·담당관, 팀장, 담당주무관으로 정하였는데 이는 본청의 직제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에서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용역 실명 대상공무원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함 (안 제9조)